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길동	750101-*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대학원	***대학원	**5-83-02***	일반교육비	7,500,000
학점은행제	***학점은행제	**2-82-03***	일반교육비	2,200,000
일반교육비	합계금액			9,700,000
현장학습비	합계금액			0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: 2020년 01~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둘리	170101-*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유치원	***유치원	**9-83-02***	일반교육비	1,100,000
학원	***학원	**4-83-00***	일반교육비	2,547,360
일반교육비	비 합계금액			3,647,360
현장학습비	비 합계금액			0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: 2020년 01~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영수	000101-*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전문대학	***전문대학	**7-82-05***	일반교육비	6,821,600
사회복지시설	***사회복지시설	**7-82-00***	일반교육비	2,760,000
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	***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 관	**6-82-01***	일반교육비	680,000
일반교육비	합계금액	10,261,		10,261,600
현장학습비	합계금액			0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: 2020년 01~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철수	050101-*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중학교	***중학교	**3-82-06***	일반교육비	55,300
중학교	***중학교	**3-82-06***	현장체험학습비	153,480
일반교육비	비 합계금액			55,300
현장학습비	비 합계금액			153,480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수강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길동	750101-*****

■ 직업훈련비 납입내역 (단위:원)

교육기관명	사업자번호	과정명	과정코드	지출금액 계
FF 아카데미	**5-85-44***	건축설계 전문과정(Auto CAD)	BIG-2020-1201248	1,200,000
FF 아카데미	**5-85-44***	디지털디자인고급과정(웹접근 성)	BIG-2020-1202663	189,450
Q 직업학교	**7-19-53***	일본어 중급 2	ACE200062191918	552,000
합계금액				1,941,450

1. 세액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

-5-

- ※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
- 2. 공제대상금액한도 : 한도 없음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철수	050101-*****

■ 교복구입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상호	사업자번호	지출금액 계
학교	**4-83-01	48,000
OK 교복	**0-37-75***	52,000
학생교복	**5-01-59***	345,000
인별합계금액		445,000

1. 공제 대상 : 중·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용

2. 공제 한도 : 학생 1명당 연 50만원

(교복구입비와 수업료 등 교육비를 합하여 연 300만원 공제한도 적용)

일련번호: 20201222-01330041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기본내역 [교육비: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길동	750101-*****

■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내역

(단위:원)

자료제출기관		원리금상환액
상호	사업자번호	원리금상환액 (공제대상금액)
장학재단	**4-82-10***	537,225
행복기금	**0-87-71***	869,464
학자금 공사	**4-81-86***	7,881,898
인별합	계금액	9,288,587

- 1. 공제 대상: 학자금대출(등록금 대출에 한정)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(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)
 - ※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종류
 -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 -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

-7-

-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
- 2. 공제 한도: 한도 없음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